

넥서스 브리프

NB-2026-047 · 예금·보호 · 발행 2026.08.18 · 읽기 6 분

사기 대응이 왜 계좌 개설 개수 제한으로 나왔나

물품거래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

연구소의 판단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돼 있다.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쓸 수 없어 대응이 계좌를 여는 단계의 개수 제한으로 나왔다고 연구소는 본다. 그 제한의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이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5일 은행·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계좌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분기당 개설 한도	1인 최대 3개	금융감독원 2026.6.25 발표
한도의 적용 단위	금융회사별, 중도해지 계좌 포함	복수 보도. 전채본 본문에는 적용 단위가 적혀 있지 않다
추가 개설·단기 해지	영업점 방문	3영업일 이내 해지 시에도 방문 필요
제한에서 빼는 상품	월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	또는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
시행 예정 시기	3분기 중	구체적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다
직전 소비자경보	2024.4.1 발령	금융감독원

발표문은 은행·중소금융권이 자유적금계좌의 분기당 개설 한도를 1인 최대 3개로 제한한다고 적었다. 추가로 개설할 때는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한다.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할 때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이 제한에서 뺀다. 은행과 중소기업권은 사기 의심거래 시 고객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금융감독원은 이 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한다고 적었다.

전채본 본문에는 한도의 적용 단위도, 비대면 개설에 한정되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디지털타임스 보도는 한도가 금융회사별이고 중도해지한 계좌도 3개에 포함된다고 전한다. 이투데이 보도는 비대면 개설에 한정된다고 전한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자유적금은 납입 금액과 시기를 가입자가 정하는 적금이다. 개설 개수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이용된 조건이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기 행위자는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자유적금계좌를 여러 개 열었다. 입금을 받은 뒤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 현금을 찾았다. 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는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보도에도 적혀 있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은 다섯 가지를 금지한다.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은 대여와 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할 목적의 대여가 앞의 세 가지다. 나머지 둘은 질권 설정, 그리고 이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다. 다섯 가지 모두 접근매체를 자기 아닌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다. 본인 확인을 거쳐 자기 앞으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여는 행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응이 개설 개수 제한으로 나온 것은 이 조항으로 이번 사안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본다.

돈을 보낸 사람이 쓸 수 있는 절차도 많지 않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금이 든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정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다. 물품 판매를 가장해 대금을 받은 사건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법 제 13 조의 2 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받는 사람을 세 가지로 정한다. 첫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계좌정보를 제공해 처벌받고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셋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벌금형을 받고 3 년, 징역형을 받고 5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물품거래 사기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므로 그 계좌의 명의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계좌를 여는 단계의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다. 제 4 항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는 종료하도록 한다.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이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여는 것은 이 조항의 거절 사유가 아니다. 2024 년 4 월 1 일 소비자경보도, 2026 년 6 월 25 일 방안도 발표문의 동사는 유도다. 법령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감독당국이 쓸 수 있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요청과 안내이고, 한도를 정하는 것은 각 금융회사라고 연구소는 본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물리는 사람은 두 갈래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물건값을 적금계좌로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쓸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한 뒤 민사 절차로 돈을 받아 내야 하고, 상대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사건에서 3 일 동안 열린 계좌 32 개에 126 명이 1 억 2000 만원을 보냈다.

다른 하나는 사기와 무관한 예금자다. 시행되면 한 분기에 자유적금을 네 번째로 열려는 사람은 영업점에 가야 한다. 연 지 3 영업일 안에 해지하려 할 때도 영업점에 가야 한다. 복수 보도는 이 3 개에 열었다가 곧 해지한 계좌도 든다고 전한다. 월 납입한도를 100 만원 이하로 정한 상품은 빠진다. 한 달에 100 만원을 넘게 넣는 자유적금을 여러 개로 나눠 운용해 온 사람이 이 절차의 대상이 된다.

시행 시점은 3 분기 중이라고만 적혀 있고 날짜가 없다. 전제본에는 적용 단위도 비대면 한정 여부도 없다. 한도를 정하는 주체가 금융회사이므로 회사마다 시점과 운용이 다를 수 있다. 이용자가 이 제한을 확인하는 시점은 대개 비대면 가입 화면에서 개설이 되지 않을 때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복수 보도는 3개 한도가 금융회사별이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한 회사에서 세 개를 채워도 다른 회사에서 다시 세 개를 열 수 있고, 회사 사이에 개설 이력을 확인할 근거는 이번 방안에 없다.
- 발표문에 근거 법령이 없다. 개설을 거절당한 이용자가 다룰 상대는 감독당국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이고, 다룰 대상은 그 회사의 내부기준이다.
- 이미 열려 있는 자유적금계좌를 어떻게 하는지가 발표문에 없다. 신규 개설만 제한하면 시행 전에 열어 둔 계좌는 그대로 쓰인다.
- 물품거래 사기로 보낸 돈을 정지시키는 절차는 이번에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제 2 호가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는 한, 피해자는 민사 절차로만 다룬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온라인에서 물건값을 보내기 전에 받는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계좌번호로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4월 1일 소비자경보 자료에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첨부해 두었다.
- 한 분기에 자유적금을 세 개 넘게 열 계획이면 거래 금융회사에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먼저 묻는다. 발표문에는 3분기 중이라고만 적혀 있다.
- 물건값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사기 의심거래로 알린다. 법정 지급정지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금융회사

- 개설을 거절하거나 개수 한도를 적용할 때 그 근거가 법령인지 회사 내부기준인지를 가입 화면과 창구에서 문자로 밝힌다.
- 3개 한도에 중도해지한 계좌가 들어간다는 점과 3영업일 이내 해지에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입 전에 알린다.

당국

- 한도의 적용 단위와 비대면 개설 한정 여부가 발표 자료 본문에 없다. 보도로만 전해지는 내용을 시행 전에 공식 자료로 밝힌다.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의 피해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안에서 다룰지 밖에 둘지를 정한다. 연구소는 근거 없는 개설 제한이 되풀이되는 원인이 이 결정을 미룬 데 있다고 본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의 피해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 안에 넣을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방안에는 그 결정이 없다.

A로 가면 · 제 2 조제 2 호의 제외 단서를 그대로 두면 피해자는 계속 민사 절차로만 다룬다. 대응도 이번처럼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 개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되풀이된다.

B로 가면 · 제외 단서를 고치면 물품거래 분쟁까지 지급정지 대상이 된다. 거래 상대의 신고만으로 판매자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를 함께 막을 장치가 필요해진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제 2 호 단서를 고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지 본다. 그 개정안이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넣는지도 확인한다.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금융실명제 소비자경보 제도
금융상품	자유적립식적금 정기적금
금융사건	모르는 돈 1 원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멈춘다 먼저 30 만원을 돌려주고 7,000 만원을 가져갔다
피해 구제	돈을 잃었을 때 맨 처음 할 일 소송으로 가야 할 때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금융감독원이 2026 년 6 월 25 일 자유적금계좌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	1 차	금융감독원 2026.6.25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원문 전재본. 첫 문장 — "금융감독원은 '26.6.25.(목) 은행·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계좌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154
자유적금계좌 분기당 개설 한도 1 인 최대 3 개, 추가 개설 시 영업점 방문 의무화	1 차	원문 — "은행·중소금융권이 자유적금계좌의 분기당 개설 한도를 1 인 최대 3 개로 제한하고 추가 개설 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하며" (생략 없이 이어지는 한 문장)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154
3 영업일 이내 해지 시에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도록 절차 강화	1 차	원문 — "3 영업일 이내 해지 시에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도록 절차를 강화함"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154
월 납입한도 100 만원 이하 상품 등은 개설·해지 제한에서 제외	1 차	원문 — "월 납입한도가 100 만원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생략 없음). 100 만원은 제한 기준이 아니라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이고, 원문은 두 경우를 '이거나'로 병렬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154
사기 의심거래 시 고객확인 강화, 의심거래 추출기준 적정성 검토,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도	1 차	원문 — "은행 및 중소기업은 자유적금계좌 사기 의심거래 시 고객확인 업무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 적정성 검토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원문이 '등'으로 열거를 닫지 않았고, 동사는 '유도함'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154
시행 시기는 3 분기 중	1 차	원문 마지막 문장 —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3 분기 중 시행하고,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사례를 전파하며,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구체적 시행일은 없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154
발표문 본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지급정지·대포통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한도의 적용 단위와 '비대면'이라는	1 차	KDI 전재본 본문 전체를 열어 해당 표현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 근거 법령도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상세 내용이 담긴 첨부 R26061148.pdf 는 열지 못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154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표현도 없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4월 1일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	1 차	금융감독원 2024.4.1 발령, KDI 전제본. 원문 —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 대응으로 경찰청 협조,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 안내, 은행권 FDS 롤 도입 유도를 적었고 첨부에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체계'가 있다. 계좌 명의에 관한 서술은 없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985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제 2 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화면에 법률 번호는 표시되지 않고 조 단위 개정일만 있다 — 제 2 조 개정일 May 16, 2023. 단서 — "Provided, That feigning the provision, arrangement, and brokerage of loans shall be included whereas feigning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etc. shall be excluded"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75
위 단서는 현행 법률 제 21320 호(시행 2026.8.4) 에도 그대로 있다	2 차	법령 데이터베이스 nepla.ai 가 게시한 현행 조문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 알선 ·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law.go.kr 이 차단돼 있어 KLRI 영문본의 현행 유지 여부를 이 자료로 교차 확인했다 https://www.nepla.ai/law/%EC%A0%84%EA%B8%B0%ED%86%B5%EC%8B%A0%EA%B8%88%EC%9C%B5%EC%82%AC%EA%B8%B0-%ED%94%BC%ED%95%B4-%EB%B0%A9%EC%A7%80-%EB%B0%8F-%ED%94%BC%ED%95%B4%EA%B8%88-%ED%99%98%EA%B8%89%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은 세 가지이고, 기간은 벌금형 3 년, 징역형 5 년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화면에 법률 번호는 없고 조 단위 개정일 표시는 "Amended on Jan. 27, 2016; May 19, 2020". 제 1 호 "A person who transfers or lends an access medium while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49 (4) 1 through 3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같은 법 제 49 조제 4 항은 벌칙 조항이다), 제 2 호 계좌정보를 제공해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고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 3 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벌금형 3 년·징역형 5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 호를 모두 확인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92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은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질권 설정, 이에 대한 알선·중개·광고·권유 다섯 가지를 금지한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화면에 법률 번호는 없고 조 단위 개정일 May 19, 2020 이 표시된다. 제 3 항 각 호 — transferring or taking over, borrowing or lending with compensation, borrowing or lending for criminal purposes, providing as the object of pledge, arranging·brokering·advertising·requesting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549&cseq=2310618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의 다섯 개 호는 현행 법률 제 21205 호(시행 2025.12.16)에도 동일하다	2 차	nepla.ai 게시 현행 조문 5 개 호 — 양도·양수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 /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 /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https://www.nepla.ai/law/%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은 고객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맺은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화면에 법률 번호는 없고 조 단위 개정일 Mar. 24, 2020 이 표시된다. 제 4 항 — "A financial company, etc. shall reject a new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거래는 종료하도록 한다		transaction with the relevant customer such as opening a new account... and if a transaction relationship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the financial company, etc. shall terminate such transaction", 제 1 호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든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01111&cseq=1739738
3 개 한도가 금융회사별로 적용되고 중도해지 계좌를 포함하며, 사기 행위자가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열고 중도해지로 현금을 찾았다는 방식, 3 일간 계좌 32 개·피해자 126 명·1 억 2000 만원 사례	2 차	헤럴드경제 2026.6.24 —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 인 최대 3 개까지만 개설(중도해지 계좌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 현금을 빼내는 방식을 썼다." 계좌 명의에 관한 서술은 없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86576
3 개 한도가 금융회사별이고 중도해지 계좌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교차 확인	2 차	머니투데이 2026.6.24 — "금융감독원은 오는 3 분기부터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 인 최대 3 개(중도해지 계좌 포함)까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계좌 명의에 관한 서술은 없다 https://www.mt.co.kr/finance/2026/06/24/2026062414575155715
한도가 비대면 개설에 한정된다고 전하는 보도가 있어 보도 간 서술이 같린다	2 차	이투데이 2026.6.24 —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 인 최대 3 개까지만 비대면 개설할 수 있고". 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는 '비대면' 없이 '개설'로 적었다. 전채본 본문에는 '비대면'이 없고 첨부 PDF 는 열지 못해 어느 쪽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6738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39 자	17 건	12 건 (71%)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2026 년 3 분기 시행 이후 각 금융회사의 자유적금 상품설명서에 개설 한도 문구가 붙었는지, 그 문구가 비대면 개설에 한정되는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제 2 호 단서를 고치는 개정안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